

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업무위탁 안내



1
**안전관리자
선임**
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

2
**안전관리자
업무 위탁**
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4항

- ☑ 사업주는 사업장에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안전관리자)을 두어야 한다.
 - 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·자격·업무·권한·선임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(시행령 제16조)으로 정한다.
- ※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규모: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

- ☑ 대통령령(시행령 제9조)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(안전관리전문기관)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
-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(건설업 제외)
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위탁 가능)



사업장 안전관리 구축

- 월 2회 방문(격주) » 현장점검 및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
- 정밀 안전 점검 » 신규,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밀안전점검
- 산업재해 조사 »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지도·조언
- 기술 안전점검 »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위험기계기구 점검
- 관련 법률 상담 »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률 상담 및 조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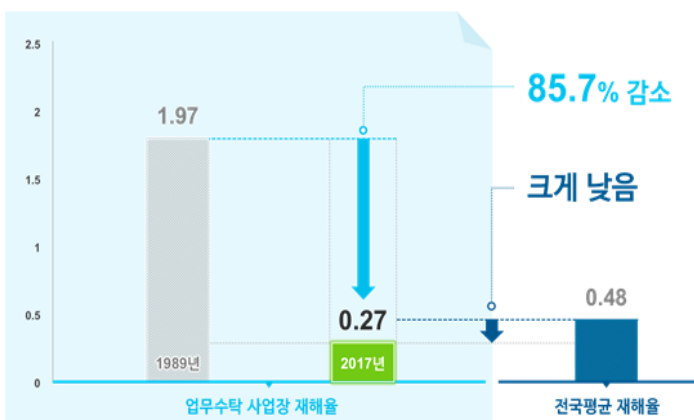


안전관리 업무위탁 절차

- 현상파악**
사업장 특성 및 기계·기구에 따른 주요 유해·위험요인 확인
- 안전점검**
정밀, 정기 안전점검 실시
정밀안전점검: 수시
정기안전점검: 매월 2회
- 보고서 작성**
정밀, 정기안전점검 후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제시
- 개선**
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·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



재해감소 효과



차별성 및 부가서비스

전문 기술인력

- 산업안전분야 기술사, 기사 등 고급 기술인력 투입

전국 Network

- 전국 단일 조직망 활용 (7개 지역본부, 21개 지회)
- 표준화된 안전관리 실시

계측장비 활용

- 고품질의 계측장비 활용으로 신뢰성 높은 안전점검 실시

특화서비스 제공

- 기술자료 제공 (포스터/안전교육자료)
-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제공
- 사업장 점검결과 Feedback

KISA Management

안전관리업무 위탁문의

사)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군산안전지원센터 063-471-4074
담당자: 황석훈 대리 010-8544-7507, 송태구 주임 010-9889-2878